

瑞山市議會會議規則中改正規則案 審 查 報 告 書

1. 審查經過

- 가. 發議日字 : 1998. 8. 19
- 나. 發議者 : 박영웅의원의 6인
- 다. 回附日字 : 1998. 8. 21
- 라. 上程日字 : 1998. 8. 28

2. 提案說明要指(提案說明: 賈大鉉 議員)

가. 改正理由

-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장·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으나, 임기 계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없어 이를 명확히 하고,
- 상호 불부합되는 일부 조항과 의회 상황 변화등에 충족되지 못하는 규정을 보완·개정하려는 것임.

나. 主要骨子

- 의원 당선인은 당선 증서를 제시하고 등록 하도록 함(안 제2조)
- 총선거후 처음 선출된 의장·부의장의 임기는 의원 임기 개시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규정함(안 제9조).

-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함(안 제9조)
- 의장·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 임시 의장이 의장 직무를 대행함(안 제11조)

3. 專門委員 檢討意見 要指

- 본 개정 규칙안의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포괄적인 내용을 우리 의회의 실정에 맞게 좀더 명확하게 규정하고, 의회의 상황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그러나 현행규칙 제9조 제2항(의원 총선거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의 삭제로 인하여 후반기 원구성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의회의 대표성 공백과 의정활동에 애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4. 主要質疑 및 答辯要指 : 생략

5. 討 論 : 없었음.

6. 少數意見 : 없었음.

7. 審査結果 : 원안대로 가결

제안번호	제 1 호
의결년월일	1998. 9. 3. (제 호)

서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발 의 자	박영웅의원외 6인
발의년월일	1998. 8. 19

서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의안	4
번호	

발의년월일 : '98. 8. 19

발 의 자 : 박영웅 의원외 6인

□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을 보면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나 서산시의회회의규칙에 규정된 의원총선거후 의장, 부의장의 임기 계산에 대한 정확한 시점 근거가 없어 이를 명확히 하고,
- 현행 규칙의 내용중 일부 상호 불부합되거나 의회상황의 변화에 따라 일부 내용을 개정·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의회의원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후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에 제시하고 등록하도록 함(안제2조).
- 나. 의원총선거후 처음 선출된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를 선출된 날로부터 개시하여 의원 임기개시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규정함(안제9조제1항).
- 다.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함(안제9조제2항).

라. 제10조중 “의장이 지정하는”을 삭제함(안제10조).

마.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함(안제11조제1항).

바. 제15조 제2항중 “제13조”를 “제14조”로 함(제15조 제2항)

사. 제17조제1항중 “개시일시”를 “개의일시”로 함(안제17조제1항)

아. 제72조제3항중 “제67조”를 “제68조”로함(안제72조제3항)

□ 참고사항

-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제46, 47조
- 국회법 제2조 및 제9조

서산시 규칙 제 호

서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서산시의회회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등록) 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원총선거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10조(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임시의장) ①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때에는 임시 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제15조제2항중 “제13조”를 “제14조”로 한다.

제17조제1항중 “개시일시”를 “개의일시”로 한다.

제72조제3항중 “제67조”를 “제68조”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등록) <u>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은 임기초에 당선통지서를 의회사무국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u>	제2조(등록) <u>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u>
제9조(의장·부의장임기) ① <u>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일 경우의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u> ② <u>의원총선거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u>	제9조(의장·부의장임기) ① <u>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원총선거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u> ② <u>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u>
제10조(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u>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u>	제10조(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u>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u>
제11조(임시의장의 선거) <u>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u>	제11조(임시의장의 선거) ① <u>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u> ② <u>제1항에 의한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u>
제15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생략) ② <u>의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의 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때까지 법제55조의 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u> ③(생략)	제15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현행과 같음) ② <u>의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개의 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때까지 법제55조의 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u> ③(현행과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7조(의사일정의 작성) ①의장은 <u>개시</u> 일시, 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그러나 재개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②~③(생략)</p> <p>제72조(결산의 심사)①~②(생략)</p> <p>③의장이 결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u>제67조</u> 제3항을 준용한다.</p>	<p>제17조(의사일정의 작성) ①의장은 <u>개</u>의 일시, 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그러나 재개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②~③(현행과 같음)</p> <p>제72조(결산의 심사)①~②(현행과 같음)</p> <p>③의장이 결산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u>제68조</u> 제3항을 준용한다.</p>	<p>제17조(의사일정의 작성) ①의장은 <u>개</u>의 일시, 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그러나 재개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②~③(현행과 같음)</p> <p>제72조(결산의 심사)①~②(현행과 같음)</p> <p>③의장이 결산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u>제68조</u> 제3항을 준용한다.</p>	<p>제17조(의사일정의 작성) ①의장은 <u>개</u>의 일시, 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그러나 재개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②~③(현행과 같음)</p> <p>제72조(결산의 심사)①~②(현행과 같음)</p> <p>③의장이 결산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u>제68조</u> 제3항을 준용한다.</p>	<p>제17조(의사일정의 작성) ①의장은 <u>개</u>의 일시, 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그러나 재개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②~③(현행과 같음)</p> <p>제72조(결산의 심사)①~②(현행과 같음)</p> <p>③의장이 결산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u>제68조</u> 제3항을 준용한다.</p>